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90 발의연월일: 2021. 11. 18.

발 의 자:이명수・金炳旭・구자근

이만희 · 박완수 · 추경호

서범수 · 윤창현 · 김상훈

지성호 · 김형동 의원

(11인)

제안이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제주4.3사건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희생자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자료라는 용어 대신 배상으로 규정하고 보상금에 관하여는 대법 원 판결을 기초하여 산정 함(제16조).

- 1.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8천만원
- 2.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4천만원
- 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는 8백만원
- 4.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형제에 대하여는 4백만원

법률 제 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희생자에 대한 배상) 국가는 제5조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결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1.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8천만원
- 2.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4천만원
- 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는 8백만원
- 4.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형제에 대하여는 4백만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제16조(희생자에 대한 배상) 국가
국가는 희생자에 대하여 위자	는 제5조에 의해 희생자로 결
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	정된 사람에 대하여 대법원이
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내린 판결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
	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
	하여는 8천만원
	2.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
	우자에 대하여는 4천만원
	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자
	<u>녀에 대하여는 8백만원</u>
	4.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형
	제에 대하여는 4백만원